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12. 13 선고 2022가단2010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단체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문종욱, 정지웅

변론 종결2022. 11. 8.

판결 선고2022.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매매계약 및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9.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선에 관하여 전남 완도군청 보관 어선원부상 피고 B 명의로 마친 2021. 9. 10.자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선에 관하여 전남 완도군청 보관 어선원부상 피고 C 명의로 마친 2021. 9. 24.자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피고 B에 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D과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2018. 12. 6.	2019. 1. 2.부터 3년	42,500,000원	50,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9. 12. 20.	2019. 12. 26.부터 10년	87,550,000원	103,000,000원
제3신용보증약정	2020. 7. 28.	2020. 8. 3.부터 2년	198,000,000원	220,000,000원
제4신용보증약정	2020. 7. 31.	2020. 8. 3.부터 2년	85,000,000원	100,000,000원
제5신용보증약정	2020. 11. 30.	2020. 12. 9.부터 10년	52,700,000원	62,000,000원
제6신용보증약정	2021. 7. 9.	2021. 7. 12.부터 2년	84,150,000원	99,000,000원

2)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D이
아래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제1신용보증약정	2019. 1. 2.	E은행 순천금융센터	50,000,000원	2022. 1. 2.
제2신용보증약정	2019. 12. 26.	E은행 순천금융센터	103,000,000원	2029. 12. 26.

제1신용보증약정	2019. 1. 2.	E은행 순천금융센터	50,000,000원	2022. 1. 2.
제3신용보증약정	2020. 8. 3.	E은행 순천금융센터	220,000,000원	2022. 8. 3.
제4신용보증약정	2020. 8. 3.	E은행 순천금융센터	100,000,000원	2022. 8. 3.
제5신용보증약정	2020. 12. 9.	F조합 보길지점	62,000,000원	2030. 12. 9.
제6신용보증약정	2021. 7. 12.	E은행 전남지역금융본부	99,000,000원	2023. 7. 12.

나. D의 어선 처분행위 등

1) D은 2021. 9. 6.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선(이하 'G'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9. 1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2) D은 2021. 9. 16. 피고 C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선(이하 'H'라고 하고, G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9. 2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D의 채무 연체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D은 2021. 11. 3.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2021. 12. 24.	E은행 순천금융센터	42,698,892원
제2신용보증약정	2021. 12. 24.	E은행 순천금융센터	89,291,325원
제3신용보증약정	2021. 12. 24.	E은행 순천금융센터	198,473,192원
제4신용보증약정	2021. 12. 24.	E은행 순천금융센터	85,198,875원
제5신용보증약정	2022. 2. 18.	F조합 보길지점	53,950,202원
제6신용보증약정	2022. 3. 11.	E은행 전남지역금융본부	85,239,53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 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어선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G를 취득한 이후 엔진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가치가 증가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B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G의 가액 상당액인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의 경제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어선을 적정한 시세에 매수하여 매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D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부터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③ 원고는 2021. 12. 24.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D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4, 15,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어선 및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7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어선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2, 4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어선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는 2021. 9.경 K에게 사용하던 노후화 된 어선을 대체할 새로운 어선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고, K은 피고 B에게 D을 소개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와 D이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② 피고 B는 2021. 9. 8. D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0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G를 매수한 후 3,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250마력 선외기를 G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 ③ 피고 C은 L을 통하여 H를 매수하게 되었고, L은 J으로부터 D이 H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 C으로 하여금 H를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C이 J이나 D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④ 피고 C은 L의 배우자인 M의 계좌를 통해 D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은 H를 매수한 후 가솔린 선외기를 거치하였으며, 선적증서와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 ⑤ 피고 C은 2018. 7. 4. 'N'이라는 상호로 전복, 다시마, 미역에 대한 어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20. 11. 3. 어촌계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전복양식업을 하고 있으며, 2021. 10. 14. P면장으로부터 H에 관한 관리선사용지정을 받았다.
- ⑥ 피고들은 실제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각 어선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⑦ 증인 J은 'D이 "아버지랑 싸워서 사업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도시로 가기 위해 H를 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D의 채무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경준

별지